

의안번호	제 720 호
의결연월일	2025. 12. 2. (제310회 제2차 정례회)

##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서산시장
제출연월일	2025. 11. 14.

#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72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1. 14.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## 1. 개정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반영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제28조(사용료의 납부)
  - 어항시설 사용료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수정(안 제28조제3항)

## 3. 단계별 추진사항

- 입법계획 결재 : 2025. 9. 4. (해양수산과-14954)
- 성별영향평가 : 2025. 9. 8.
- 입법예고 : 2025. 9. 5. (서산시 공고 제2025-2240호)
- 법제심사 : 2025. 9. 30.
- 조례·규칙심의회 : 2025. 10월 중 (※원안가결)
- 시의회 의결 : 2025. 11월 중
- 공포 및 시행 : 2025. 12월 중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다. 성별영향평가 결과
- 라. 법제심사 결과

##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용·사용하여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8항을 준용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8조(사용료의 납부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용·사용하는 경우로서 <u>사용 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 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 우 잔액의 이자율은 연 100분 의 6으로 한다.</u></p>	<p>제28조(사용료의 납부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용·사용하여 <u>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8항을 준용한다.</u></p>

## 《참고사항》

### 가. 관련법령

####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(발체)

- 제14조(사용료)**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,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1., 2022. 4. 20., 2023. 8. 22.>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, 전세금의 계산,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3. 6. 21., 2022. 4. 20.>
-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20만원을 말한다. <신설 2022. 4. 20.>
-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. <신설 2013. 6. 21., 2022. 4. 20.>
- ⑥ 제13조제6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 <신설 2016. 7. 12., 2017. 7. 26., 2022. 4. 20.>
-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,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. <개정 2013. 6. 21., 2014. 7. 7., 2016. 7. 12., 2022. 4. 20.>
-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8. 4., 2013. 6. 21., 2016. 7. 12., 2017. 7. 26., 2020. 12. 22., 2022. 4. 20., 2023. 8. 22.>
-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(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)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2. 22., 2022. 4. 20.>
- 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. <신설 2010. 8. 4., 2013. 6. 21., 2016. 7. 12., 2020. 12. 22., 2022. 4. 20.>

####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

[행정안전부고시 제2025-22호, 2025. 3. 14.]

- 제20조(고시이자율의 산정)** ① 영 제11조의3, 제14조, 제32조, 제39조, 제45조, 제81조 및 제8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"신규취급액 기준 COFIX"로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용료, 대부료, 매각대금,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제2항의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.

## 나. 예산조치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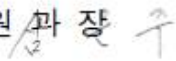
- 「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해당 없음

#### 4. 작성자 :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과장 윤여신

## 다. 성별영향평가 결과

도약하는 서산, 살맛나는 서산						
 해뜨는 서산	서 산 시					
수신 해양수산과장 (경유)						
제목 「서산시 어항관리 조례」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						
1. 해양수산과-15160(2025. 9. 8.)호와 관련됩니다.						
2. 「서산시 어항관리 조례」는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,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,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						
가족지원과장 						
주무관	조영미	여성정책팀장	이선희	가족지원과장	2025. 9. 8.	심은주
협조자						
시행	가족지원과-29594	(2025. 9. 8.)	접수	해양수산과-15160	(2025. 9. 8.)	
우	31974	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로길 1, 가족지원과 (읍내동)			/ <a href="https://www.seosan.go.kr">https://www.seosan.go.kr</a>	
전화번호	041-660-3021	팩스번호	041-660-2055	/ <a href="mailto:popoys97@korea.kr">popoys97@korea.kr</a>	/	대국민 공개
비전있는 희망 도시, 서산						

라. 법제심사 결과

# 자치입법안 심사조서

□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사항	심사항목	심사세부내용	심사결과
선행절차	사전협의	관련기관, 단체,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	적정
	소비자정책심의	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	해당없음
	성별영향분석평가	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	적정
	비용추계	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	해당없음
	규제	규제 해당 여부	해당없음
입법내용	필요성	①새로운 자치입법 제·개정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	적정
	적법성	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, 의무부과,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	적정
	타당성	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	적정
입법형식	표현방식	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	적정
	조문배열	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	적정
부칙	작성형식	제·개정이유,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	적정
규정	시행일	소급적용 규정 여부	해당없음
	표기요령	①권리제한,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, 지위침해 방지 여부	해당없음
기타	행정규칙 예산관련	①관련 하위법규,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	적정
종합검토의견		- 관련 상위 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, 법적 문제점 없음	

심사를마침	심사일	2025. 9. 29.(제1278호)
	심사자	지방행정서기 최 욱
	확인자	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